# 핀테크 개론

송금

### 핀테크 등장 및 서비스

- '전통은행금융시장'과 판이하게 다른 ' 핀테크금융'
- 핀테크금융 : 금융(Finance) & 기술(Technology)의 합성
- IT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전통금융의 문제를 간편하게 풀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분야
  - 금융시장에서의 기술발전은 가장 혁신이 쉽거나 가장 필요한 곳에서 시작
  - 송금, 자금결제, 크라우드펀딩, P2P대출, 자산관리 및 소셜투자, 보험 분야에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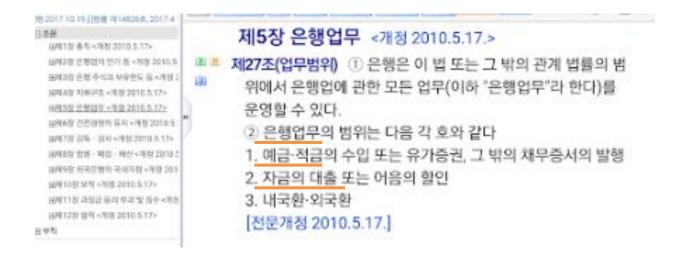
### 송금

- 은행 혹은 우체국을 이용한 전통적 송금
  - 은행 직원을 통한 송금
  - 우체국 (전신환·통상환·소액환)

(전신환) 요약 전신에 의한 송금제도. 고객이 송금을 원하면 <u>우체국</u>에서 전신으로 수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<u>우체국</u>에 통지한다. 수취<u>우체국</u>에서는 전신환증서를 발행하여 <u>전보</u>배달처럼 수취인에게 배달한다. 수취인은 전신환증서를 <mark>우체국에</mark> 제시하고 환금을 지급받는 제도

- (국내 송금)
- 인터넷 뱅킹(모바일뱅킹)을 통해 낮은 수수료로 송금
  - 수신자의 계좌번호, 보안카드 필요
- (해외 송금)
- 은행 창구를 이용한 송금
- 대표적으로 은행의 주된 업무

### 은행법



### 용어해설

내국환: "내국환"이란 국내에서 행해지는 환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 격지자간의 채권·채무의 결제 또는 자금수수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이행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
외국환:"외국환"이란 금융기관이 국제간의 대차를 결제하는 환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차관계를 현금수송에 의하지 않고 국내외 은행의 중개에 따라 결제하는 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
<출처: 한국거래소, 증권용어사전 참조>

### 송금

- 전통적인 송금 기관인 은행 이외 새로운 기관 등장
- SNS기업과 휴대전화 제조사, 해외송금전문기관 등 등장
  - 국내송금: 은행 이외의 시스템에서 송금 가능
  - 해외송금: 해외송금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국내송금자 → 국내은행 → 중계은행 → 해외은행 → 국외수취인 단점: 거래수수료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림
    - → 다양한 방식으로 송금수수료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: 해외송금서비스 특화

### 국내 간편송금

-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의 주요 사업자
- (2015년 2월) ㈜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(TOSS)
- (2017년 7월) 카카오 뱅크

###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 현황

구분	간편송금 서비스명	서비스 출시일	자체 플랫폼 사용 여부	비고
1. 비바리퍼블리카	토스	'15.2월	0	
2. 네이버	네이버페이 송금	′15.6월	0	
3. 쿠콘	체크페이	'16.2월	0	
4. 카카오페이	카카오페이 간편송금	′16.4월	0	
5. NHN페이코	페이코 송금 서비스	′16.6월	0	
6. 엘지유플러스	페이나우	′16.6월	Х	쿠콘과 제휴
7. 핀크	핀크	'17.9월	0	

### 국내 간편송금

- 국내 간편송금은 2018년 5월 기준, 2016년 대비 약 5배 성장
- 서비스의 두 주요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
-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음

### 간편송금 거래 현황

(단위: 만건, 억원, %)

		이용 건수			이용 금액					
구분	′15년	′16년	17년	'17년 '18.5말		'15년	'16년	'17년	'18.5말	
	15년	10년			점유율	13년	10년	1/년		점유율
상위 2개사	228	4,966	22,702	15,812	97.0	825	23,926	113,726	111,931	96.4
기타 5개사	5	147	931	481	3.0	10	487	5,815	4,187	3.6
총계	233	5,113	23,633	16,293	100.0	835	24,413	119,541	116,118	100.0

## 국내 간편송금 (TOSS)

- 간편송금 서비스는 기존의 은행을 통한 이체와 달리
- 수신자의 계좌번호,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없이 바로 송금 가능하여
- 송금 편의성을 극대화

- TOSS는 은행의 자동이체 방식을 활요안 간편송금서비스로, Firm 뱅킹 형식으로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수수료를 대납해 추가비용 없음
- 동시에 대부분의 송금에 대해 무료로 송금서비스를 제공
- → 간편송금 서비스의 수익모델에 대한 의문

# 국내 간편송금 (TOSS)

- 최근 간편송금 서비스 수준의 균일화 및 은행권의 간편송금 시장 진출로 인해 경쟁 심화 예) 신한은행 SOL
- 현재 시장점유율을 높지만,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음
- → TOSS는 송금 서비스를 통해 확보환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
- 사실상 은행과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



• 해외송금: 수수료

• 은행연합회: http://www.kfb.or.kr/



#### 참고사항

● 아래에 안내되는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는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부담하는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로, 이외에 해외 중개은행에 부담하는 중개은행 수수료 및 해외 현지 은행에서 송금 액을 찾으실 때 부담하는 현지 은행 수수료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은행	카테고리	구분	수수료 리스트	전신료
KB국민은 행	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	창구	미화 500불 상당액 이하 : 5,000원 미화 2,000불 상당액 이하 : 10,000원 미화 5,000불 상당액 이하 : 15,000원 미화 10,000불 상당액 이하 : 20,000원 미화 10,000불 상당액 초과 : 25,000원	(건당) 8,000원
스탠다드 차타드은 행	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	인터넷	건당 미화 2천불이하: 7,000 건당 미화 4천불이하: 10,000 건당 미화 6천불이하: 12,000 건당 미화 8천불이하: 15,000 건당 미화 1만불이하: 18,000 건당 미화 2만불이하: 20,000 건당 미화 4만불이하: 25,000 건당 미화 4만불소과: 30,000	(건당) 8,000원

은행을 통한 해외송금: 비싼 송금수수료 & 긴 송금 시간



#### 참고사항

● 아래에 안내되는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는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국내은행에 부담하는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로, 이외에 해외 중개은행에 부담하는 중개은행 수수료 및 해외 현지 은행에서 송금 액을 찾으실 때 부담하는 현지 은행 수수료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은행 송금 시스템의 중심:

**SWIFT** (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)

SWIFT는 국제금융거래 메시지의 신속한 교환을 위해 브뤼셀과 암스테르담, 버지니아 등 3개소에 조작센터를 설치하고, 이 조작센터에서는 international data transmission line을 통해 각국의지역 메시지 처리센터를 연결하여 표준형태의 은행간 거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. 한국은 1992년 3월에 52개 기관이 참가 가입 (p. 261)

- 1999년 제정되었던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
- http://www.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27&query=%EC%99%B8%EA%B5%AD%ED%99%98%EA%B1%B0%EB
  %9E%98%EB%B2%95#undefined

#### 표 본문 田 부칙 16. 전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8, 7, 1,] [대통령령 제29009호.] 17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7, 7, 26.] [대통령령 제28211호 18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7, 7, 18.] [대통령령 제28145호 19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6, 12 1.] [대통령령 제*27*556호 20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6. 6. 3.] [대통령령 제27184호, 21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6, 3, 22.] [대통령령 제27038호. 22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5, 7, 1,] [대통령령 제26341호, 23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4, 12, 31.] [대통령령 제25945호 24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5, 1, 1,] [대통령령 제25818호.] 25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[시행 2014, 1, 1,] [대통령령 제25050호,

26. 외국환거래법 시행령

#### 외국환거래법

[시행 1999, 4, 1,] [법률 제5550호, 1998, 9, 16, 폐지제정]

📵 🔼 🛘 제7조 (채권의 회수의무)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-

####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

[환] ○ **계8조 (외국한업무의 등록등)** ①외국한업구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,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 /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(이하 "換錄業務"라 한다)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{ 한다.

- 1.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
- 2.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
-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지(이하 "換錢營業者"라 한다)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- ®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(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者를 포함하며, 이하 "外國換業務取扱機構"이라 한다)은 국민경제의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기를 받아야 한다.
- ®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2017년 7월, 외국환거래법 개정: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 시장에 참여
- http://www.law.go.kr/LSW/lsSc.do?tabMenuId=tab18&p1=&subMenu=1&nwYn=1&section=&tabNo=&query=%EC%99
  %B8%EA%B5%AD%ED%99%98%EA%B1%B0%EB%9E%98%EB%B2%95#undefined

#### 외국환거래법

[시행 2017, 7, 18.] [법률 제14525호, 2017, 1, 17., 일부개정] 최종공포내용

####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《매점 2009. 1, 30.》

- □ **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**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 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《매적 2011, 4, 30.》
  -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,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. 《개점 2011, 4, 30.》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 등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
  - 그 가회재저부자과에게 도움하여야하다. 이 겨우 제1층 만 제2층이 이구하여부이 그는 바서 도그체저이 바이면 아저서 화면을 위해 가즈은 대통령령으로 저하다. 스내저 2017 1 17 🔾
  - 1.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,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
  - 2.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.
  - 3.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
  -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"라 한다)가 그 등록사항 중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<u>대통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〈<mark>개정</mark> 2011, 4, 30,, 2017, 1, 17,〉
  -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(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. 이하 "외국환업무취급기관"이라 한다)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,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경무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《개정 2011, 4, 30.》
  - ®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17, 1, 17.〉</u>
  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함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<u>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</u>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《신 설 2017. 1. 17.》

[전문개정 2009, 1, 30,]

-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의 경쟁 심화
- 카카오뱅크: 기존 은행 해외 송금수수료의 1/10로 해외 송금서비스 시작

구분	해외송금 국가	해외송금 수수료		
당발송금	미국, 캐나다, 영국, 호주, 싱가포르, 홍콩, 뉴질랜드,	송금액 미화 5,000달러 이하 : 5,000원(건당)		
	인도, 유럽 11개국 <sup>주)</sup>	송금액 미화 5,000달러 초과 : 10,000원(건당)		
	일본, 필리핀, 태국	송금액 무관 : 8,000원(건당)		
타발송금		5,000원(건당) ※송금액 미화 100불 미만 : 면제(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)		

- 현재 해외 송금업 등록 현황
- http://www.fss.or.kr/main/fin\_comp/smallsum/remittance1.jsp

- 현재 해외 송금업 등록 현황
-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/main/fin\_comp/smallsum/remittance1.jsp">http://www.fss.or.kr/main/fin\_comp/smallsum/remittance1.jsp</a>

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 서비스 Target Market 혹은 수요는?

대표자 : 전혁구 설립연월일: 2007-07-27 전화번호: 02-877-7200 본점소재지: (08758)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, 803호(봉천동, 백광빌딩) 송금대상국가: 네팔 등 21개국 취급통화: USD 등 5개 건별한도: USD 3,000 연간한도: USD 20,000 비고: 2018-01-12 변경신고(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범위 변경 및 외국협력업자 추가) 2018-03-08 변경신고 (외국협력업자 추가) 2018-04-30 변경신고(소액해외송금업 계좌정보 2018-7-24 변경신고(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범위, 외국협력업자 명칭 및 소재지) 등록번호: 2017-2 등록일자: 2017-08-23 상호 :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일반 대표자: 성종화 설립연월일: 2016-08-30 전화번호: 1588-6864 본점소재지: (03104)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5, 6층 601호(창신동, 글라스타워) 송금대상국가: -당발: 네팔 등 99개국 취급통화 : 당발: USD등 65개 건별한도: USD 3,000 연간한도: US 타발: 네팔 등 95개 타발: USD등 62개 비고: 2017-09-21 변경신고(영업소 추가, 계좌정보 변경) 2017-09-29 변경신고(외국협력업자 추가) 2017-11-27 변경신고(영업소 추가) 2017-12-26 변경신고(소액에외송금업무 취급범위 및 수행방식 변경, 외국협력업자 추가) 2018-01-22 변경신고(영업소 폐쇄) 2018-02-02 변경신고(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범위 변경, 외국협력업자 추가)) 2018-03-19 변경신고(등록 구분 변경)) 2018-03-22 변경신고(외국협력업자 추가)) 2018-05-11 변경신고/외국협력업자 추가/" 2018-05-31 변경신고/보점(영업소)소재지 변경-영업소 추가)) 2018-08-21 변경신고(본점(영업소)소재지 변경-영업소 추가)) 2018-08-21 변경신고(소액혜외송금업무 취급범위, 소액혜외송금업 계좌정보, 외국협력업자 명칭 및 소재지) 등록번호: 2017-3 등록일자: 2017-08-31 상호 : 주식회사 시스퀘어코리아 소규모전업 대표자: 정중기 설립연월일: 2017-05-19 전화번호: 02-6958-7074 본점소재지: (06163)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2길 5, 3층(삼성동, 덕봉빌딩) 송금대상국가: 일본 등 174개국 취급통화: USD 등 88개 건별한도: USD 3,000 연간한도: USD 20,000 2017-11-08 변경신고(영업소 추가) 등록번호: 2017-4 등록일자: 2017-08-31 상호: 주식회사 핀크 일반 대표자: 민응준 설립연월일: 2016-08-24 전화번호: 02-6031-5200 본점소재지: (04551)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파인에비뉴 비동 20층(을지로2가) 송금대상국가: 일본 등 98개국 취급통화: USD 등 52개 건별한도: USD 3,000 연간한도: USD 20,000 비고: 2018-04-23 변경신고(소액해외송금업 계좌정보) 등록번호 : 2017-5 등록일자: 2017-09-18 상호 : 주식회사 핀샷 일반 대표자: 박노현 설립연월일: 2016-03-28 전화번호: 070-4469-6217 본점소재지 : (03911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, 마포창업복지관 507호(상암동) 거변하는 · LISD 3 UUU 소그대사구가 표리피 드 3개구

상호 : 주식회사 이나인페이 일반

등록번호: 2017-1 등록일자: 2017-08-23

은행들의 해외송금서비스 개선 <a href="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280810">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280810</a>

KEB하나은행 원큐 트랜스퍼 우리은행 위비 글로벌 퀵 송금 KB국민은행 KB글로벌 바로송금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간편해외송금 (은행들은 기존 송금수수료에 대해 최저 필요비용을 비용으로 청구한다고 공언하였음)

- 신규 플레이어 진출
  - 카드 증권사의 해외송금 허용

http://www.fss.or.kr/fss/kr/promo/bodobbs\_view.jsp?seqno=21747

- 한국의 해외송금 서비스 시장은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국가의 외환 통제(규제)에 의해 늦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음
- 기존의 해외 송금 개선 사항
- 외환은행예) 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277&aid=0002859386

• 시티은행 예)

https://namu.wiki/w/%ED%95%9C%EA%B5%AD%EC%94%A8%ED%8B%B0%EC%9D%80%ED%96%89?from=%EA%B8%80%EB%A1%9C%EB%B2%8C%20%EA%B3%84%EC%A2%8C%EC%9D%B4%EC%B2%B4#s-4.3

### 해외 송금 규제 완화•경쟁 심화

• 2018.9.27『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-감독체계 개선방안』발표

#### Ⅲ. 주요 내용

#### □ 외환 산업의 혁신적 · 경쟁적 환경 조성

- ① 은행에만 허용되던 **해외 송금** 업무를 **증권·카드사** 등에도 허용 (1차적으로 소액 송금(건당 3천불, 年 3만불 이내) 허용)
  - 단기금융업 인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고, 농협·수협 단위 조합에 대해 규제 완화(年 3 → 5만불)
  - \* 1년 이내의 단기 외화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업금융(50% 이상 의무) 등 생산적 금융에 활용
- ② 전자자급수단(작불·선불)을 통한 해외결제 및 다양한 환전 방식 도입을 지원하고, 온라인 환전 중개\*\* 등 혁신적 서비스 시범 사업 허용
  - \* (예) 해외 여행 이후 잔돈을 공항 무인환전기기에서 국내 선불카드로 충전(환전)
  - \*\* 온라인 환전중개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오프라인 환전영업소간 환전거래를 중개
  - 소액 송금업의 송금 한도를 상향(연간 2만불 → 3만불)하고, 자금 정산 기관 범위를 기존 은행에서 증권사, 카드사까지 확대
- ③ <u>업체간</u> 환전·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,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례 등의 설명 강화("알쓸의환답")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증진

#### ② 외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

- ① 거래 대금 자급·수령시 전자문서 증빙 허용, 구두 증빙 가능 수령액 확대 (동일인 기준 1일 2만불 → 5만불), 규제 실익이 낮은 신고 면제 등 추진
  - \* (예)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(예 : 보증금 1만불 이하) 임차시 신고 면제
- ② 선제적 위규 예방 위해 은행 등 외국환취급기관 및 외환 거래 관련 非외국환취급기관<sup>\*</sup>의 對고객 사전 안내·설명 강화

• 해외에서의 대표적인 글로벌 송금서비스 제공회사 (2010년 경 시작)

트랜스퍼와이즈(www.transferwise.com)

아지모(<u>www.azimo.com</u>)

줌(<u>www.xoom.com</u>)

-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방식
- Pooling: 금융기관 간 해외 송금은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므로, 한 번에 해외 송금 업체에 송금할 돈을 pooling하여 일시에 송금 후, 이를 분할하 여 지급
- Netting: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해당 통화를 송금하고자 할 때, 각국에서 받거나 송금할 돈을 상계 후 잔액을 해외송금하여 송금수수료 절감
- 가상화폐: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페를 매개로 사용하여 수수로 절감

# 숙제

-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한 것을 인증하기